

## 건설기술 진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우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4957
------------	------

발의연월일 : 2017. 1. 3.

발 의 자 : 박찬우 · 김도읍 · 김성찬  
김현아 · 박덕흠 · 박명재  
안상수 · 이명수 · 이우현  
이찬열 · 임종성 · 정인화  
정태옥 · 홍문표 의원  
(14인)

### 제안이유

최근 수입산 불량 자재가 유통되고 있어 품질 시험·검사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한 처분 규정이 미흡하여,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불량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31조)

- 1)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 2)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나.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신설(안 제60조)

- 1)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 실시
- 2)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시 7일 이내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바.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

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p> <p>② 시 · 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 라.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p> <p>-----</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마.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u></p> <p><u>바.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u></p> <p><u>사.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u></p>
<u>&lt;신 설&gt;</u>	
<u>&lt;신 설&gt;</u>	

	<p><u>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 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 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 한 경우</u></p>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p><u>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u></p>
<u>&lt;신 설&gt;</u>	<p><u>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 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 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 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건설공 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 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한다.</u></p>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u>	⑤ <u>그 밖에 제1항에 -----</u>

대행, <u>제2항에</u>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 <u>제4항에</u> ----- ----- ----- -.
--	---